

인천지방법원 2024. 10. 29 선고 2023나78746 판결 [보증채무금]

재판경과

인천지방법원 2024. 10. 29 선고 2023나78746 판결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. 10. 26 선고 2022가소229208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A

피고, 피항소인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8. I

9. J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전영하

변론 종결2024. 8. 27.

판결 선고2024. 10. 29.

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. 10. 26. 선고 2022가소229208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 원고에게, 피고 B는 3,333,336원¹⁾ , 나머지 피고들은 각 3,333,33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2. 6. 15.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²⁾ 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'2. 고치는 부분'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고치는 부분

-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부터 제13행의 "제출 증거에 의하면"을 "을가 제1, 2, 3호증,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"으로 수정한다.
-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부터 제13행의 "1997. 8. 12. 피고 E은"을 "1997. 8. 12. 피고 E이"로 수정한다.
-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부터 제11행의 "피고 E의 채무를"을 "피고 E의 망 K에 대한 위 채무를"으로 수정한다.
-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부터 제10행의 "장성한"을 "작성한"으로 수정한다.

-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부터 제9행의 "원고에게"를 "원고(망 K)에게"로 수정한다.
-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2, 13행의 "제출증거에 의하면"을 "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"으로 수정한다.
-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1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.

소결

따라서 원고에게 망 L(주민등록번호 1 생략)으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, 각 상속지분(1/9)에 따라 피고 B는 3,333,336원($30,000,000\text{원} \div 9$)3), 피고 C은 3,333,333원($30,000,000\text{원} \div 9$)과 각 이에 대하여 2002. 6. 15.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 B, C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, 나머지는 기각하여야 하며,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김범준

판사진희원

판사이형우

- 1) 소송경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, 원고가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와 항소장에 기재한 "3,333,336원"은 "3,333,333원"의 오타로 보이나, 피고 B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이나 취소, 변경은 하지 아니한다.
- 2) 당심 2024. 8. 27.자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진술에 따라 이와 같이 선택한다.
- 3) 앞서 각주 1)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와 같이 기재한다.